

대학원 임상병리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임상병리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임상병리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임상병리학과 소속 교수들은 임상병리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 석사의 졸업 이수를 위한 학점은 24학점으로 공통에서 필수 6학점, 선택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타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석사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타전공 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학생은 매년 2월 말, 8월 말까지 지도교수와 협의하고 승낙서를 받아 학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등록학기는 총 4학기이며, 매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보충과목 이수자는 한 학기에 15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다.

제4장 논문지도

제5조 (지도교수의 선정) 1학기 중에 지도교수를 정하며 논문제출 전 2개 학기 이상 같은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구지도학점은 3학점씩 총 3학기에 걸쳐 신청하며, 2학기부터 신청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6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1. 석사과정은 연구재단 등재지 (KCI) 1편 이상 또는 SCI(E) 급 연구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출판할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2. 박사과정은 경우 연구재단 등재지 (KCI) 2편 이상 또는 SCI(E) 급 연구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출판할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출제한다.
2.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음.
3.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4.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를 한다. 합격점수는 60점 이상이다.

제8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경우 외국어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4조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내국인은 영어 공인어학시험성적 및 영어권 국가 해외연수 경력으로,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면제신청 가능하다.

제6장 학위과정

제9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 과정생은 학위논문으로 선택한다.

제10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1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석사는 2학기 이후 연구계획서를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연구계획서 발표는 매년 2월 개강 전, 6월 종강 직후, 8월 개강 전, 12월 종강 직후에 한다.

- 가. 연구계획서를 다시 발표해야 하는 경우는 그 다음 연구계획서 발표일에 한다.
- 나. 종합학력고사와 연구계획서 발표가 겹치지 않게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제12조 (예비발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심사신청자는 반드시 예비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보안유지가 필요할 경우 재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심사위원)

1. 학위 논문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 3명)이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임상병리학 전공 교수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 위원 중 1인을 심사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3.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4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졸업 요건

제15조 (학위별 졸업요건)

1. 지정된 모든 규정 과목의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2. 종합학력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종합학력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름).
3. 예비심사를 합격해야 한다.
4. 아래에 명시된 최소 학술 논문 게재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참조).
5. 졸업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정 양식에 따라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Thesis Committee에 이를 제출하여 학위 논문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최소 학술논문 게재 실적에 관한 세부 규정)**

1. 석사학위 : 연구재단 등재지 (KCI) 1편 또는 SCI(E) 급 연구논문 1편을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출판한다.
2. 박사학위 : 연구재단 등재지 (KCI) 2편 또는 SCI(E) 급 연구논문 1편을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출판한다.
단, SCI(E) 급 연구논문을 출판한 경우 1편을 연구재단 등재지 (KCI) 2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예정자가 최소 학술논문 게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주임교수를 포함한 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학술논문 게재 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